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태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20

발의연월일: 2021. 1. 28.

발 의 자 : 태영호ㆍ이명수ㆍ김용판

허은아 · 김영식 · 이종배

조경태 · 정운천 · 김승수

임이자 · 송석준 · 윤한홍

이주환 • 윤재옥 • 권영세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1년부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최고세율이 42%에서 45%로 3%p 상향조정됨에 따라 1.6만 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, 5년간 3조 9,045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있음.

그러나, 최근 종합부동산세, 양도소득세, 재산세 등 부동산 세제가 연이어 인상되는 상황에서 소득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은 급격히 가중될 수 있음.

이에 종합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상승분을 고려하여 8,800만원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구간별로 최대 1%까지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55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종합소득 과세표준	세 율		
1,2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5퍼센트		
1,200만원 초과 4,600만원 이하	60만원 + (1,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퍼센 트)		
4,600만원 초과	536만원 + (4,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3.5퍼		
8,800만원 이하	센트)		
8,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	1,523만원 + (8,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 센트)		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	3,693만원 + 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38퍼센트)		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,393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			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		
10억원 초과	3억8,393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 센트)		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
제55조(세율) ① 거주자의 종합소		제55조(세율) ①	
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			
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			
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			
(이하 "종합소득산출세액"이라			
한다)을 그 세액으로 한다.			
<u>종합소득</u> <u>과세표준</u>	세월	<u>종합소득</u> <u>과세표준</u>	세월
1,2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6퍼센트	1,2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5퍼센트
1,200만원 초과	72만원 + (1,200만원을	1,200만원 초과	60만원 + (1,200만원을
4,600만원 이하	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)	4,600만원 이하	초과하는 금액의 14퍼센트)
<u>4,600만원 초과</u>	582만원 + (4,600만원을	4,600만원 초과	536만원 + (4,600만원을
8,800만원 이하	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)	8,800만원 이하	초과하는 금액의 23.5퍼센트)
8,800만원 초과	1,590만원 + (8,800만원을	8,800만원 초과	1,523만원 + (8,800만원을
<u>1억5천만원 이하</u>	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)	1억5천만원 이하	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)
<u>1억5천만원 초과</u>	3,760만원 + (1억5천만원을	<u>1억5천만원 초과</u>	3,693만원 + (1억5천만원을
<u> 3억원 이하</u>	초과하는 38퍼센트)	<u> 3억원 이하</u>	초과하는 38퍼센트)
<u> 3억원 초과</u>	9,460만원 + (3억원을_	<u>3억원 초과</u>	9,393만원 + (3억원을
<u>5억원 이하</u>	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)	<u>5억원 이하</u>	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)
<u>5억원 초과</u>	1억7,460만원 + (5억원을	<u>5억원 초과</u>	1억7,393만원 + (5억원을
<u>10억원 이하</u>	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)	<u>10억원 이하</u>	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)
<u>10억원 초과</u>	3억8,460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)	10억원 초과	3억8,393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)
② (생 략)		② (현행과 같음)	